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2019. 11. 1.~11. 15.

조 례 안 상 정
(7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9-115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
2019-116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2019-117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9-118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9-119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19-120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9
2019-121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9-11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군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을 정함(안 제2조)

- 1) 매년 수립·시행
- 2) 추진사항 정기 또는 수시 점검

나.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안 제3조)

-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9. 9.~9. 3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9-11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종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선정(안 제2조·제3조)
- 나.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운영(안 제4조~제8조)
- 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안 제9조)
- 라. 대상사업의 점검·관리 및 평가(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
-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1,120천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9. 9.~9. 30.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별지 제1호~제3호서식 성별구분항목)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1. 대상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대상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
 2.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거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명세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남/여)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00.00.00	입안자, 검토 및 결재자, 감독공무원 등의 직과 성명 기재	
○ 내용	'00.00.00	입안자, 검토 및 결재자, 감독공무원 등의 직과 성명 기재	

<기재항목>

- ① 정책사업명: 온-나라시스템 상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명을 적습니다.
- ② 추진배경: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습니다.
- ③ 사업개요: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적습니다.
- ④ 사업부서: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을 적습니다.
- ⑤ 담당자: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적습니다.
- ⑥ 선정기준: 제2조 각 호 중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 ⑦ 사업기간: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을 적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그 밖의 주요내용 등을 적습니다.
- 일시 및 관련자는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을 적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 -	담당부서 작성자	(부서명 / 담당명) (이름 / 사무실연락처) (남/여)
정 책 명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추진기간: ○ 총사업비: ○ 주요내용 -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도 붙일 수 있습니다.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11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체납액 유무 검토 규정을 삭제하여 교부조건을 완화하고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사용 시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로페이 사용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 입안원칙, 위임범위에 맞게 조문 정비

1) 법령 재기재 사항 삭제(안 제4조·제6조)

가) 보조대상 사업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재기재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법 제32조의2제6항~제8항 재기재

다) 실비보상 :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2) 정비 :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완화함(안 제13조제5호)

1) 삭제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 검토

2) 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남

다.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1) 지방보조금 집행 시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의무사용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호, 위임행정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담당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9. 26.~10. 1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제4조·제9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법”을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의3제8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제1호 중 “위배”를 “적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2(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 성질의 경비
2.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 10까지에 따라 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지방보조금"이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p> <p>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p> <p>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u><삭 제></u></p>
<p><u>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u>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u>제4조(보조대상 사업) 군수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u></p> <p>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p> <p>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p> <p>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p> <p>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p>	<p><u><삭 제></u></p>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③ (생략)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제5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의3제8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13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유무

<신 설>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삭 제>

제16조2(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 성질의 경비
2.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11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거창 향노화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 도로명 주소사업,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등 정부 및 군 시책 추진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조정(안 제25조)

- 1) 정원 총수 증28명 : 702명 → 730명
- 2) 집행기관 정원 증28명 : 688명 → 716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4)

1)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28명

가) 현행 : 628명(본청300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1명, 사업소37명, 읍39명, 면140명)

나) 조정 : 656명(본청309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8명, 사업소37명, 읍40명, 면15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4조·제29조·제30조·38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100백만원 확보, 2020년도 예산 1,232백만원 확보예정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9. 24.~10. 1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불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702명”을 “7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88명”을 “716명”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702명</u>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 정원: <u>688명</u></p> <p>2.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p>	<p>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730명</u>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 정원: <u>716명</u></p> <p>2.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p>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730 702	331 322	14	141 134	67	74 67	41	41 40	162 151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98 670	327 318	14	114 107	40	74 67	40	41 40	162 151
	4급	3	3							
	4~5급	2	0		1		1		1	
	5급	37	15	3	5	4	1	3	0	11
	6급 이하	656 628	309 300	11	108 101	36	72 65	37	40 39	151 140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5	2		2	2		1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나. 관련조문 : 제25조(정원 총수)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군비	100	1,232	1,252	1,272	1,292	5,148

3. 관련 의견

국가 및 군정 행정기능 강화에 따라 인력증가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0년 기준)

가. 정원 총수 증원 : 28명

나. 연간 인건비 증가 총액(2020년) : 1,232백만원

기본급 1,120백만원, 수당 등 112백만원

작성자 : 행정과장 곽승욱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11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서비스 추진과 군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른 면 기관 명칭을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면 기관 명칭이 모두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함
(안 제명·제1조·제2조)

나. 면 기관 명칭 변경함(안 별표)

- 1) 웅양면사무소 ⇒ 웅양면 행정복지센터
- 2) 고제면사무소 ⇒ 고제면 행정복지센터
- 3) 북상면사무소 ⇒ 북상면 행정복지센터
- 4) 마리면사무소 ⇒ 마리면 행정복지센터
- 5) 남하면사무소 ⇒ 남하면 행정복지센터
- 6) 신원면사무소 ⇒ 신원면 행정복지센터
- 7) 가북면사무소 ⇒ 가북면 행정복지센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9. 24.~10. 14.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로 한다.

제2조 중 “군·읍·면사무소”를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u>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u>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무소 소재지) <u>군·읍·면사무소</u>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p>	<p><u>거창군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u>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u>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무소 소재지) <u>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u>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p>

[별표]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기 관 명	소 재 지
거창군청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90
주상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
웅양면 행정복지센터 웅양면 사무소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1431
고제면 행정복지센터 고제면 사무소	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14
북상면 행정복지센터 북상면 사무소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10
위천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4
마리면 행정복지센터 마리면 사무소	거창군 마리면 빼재로 18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남상면 인평길 36
남하면 행정복지센터 남하면 사무소	거창군 남하면 영서로 41
신원면 행정복지센터 신원면 사무소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67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8
가북면 행정복지센터 가북면 사무소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17-16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9-120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질병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역소의 설치 근거와 위치를 정함(안 제2조)

나. 방역소의 시설을 정함(안 제3조)

다. 방역소의 기능을 정함(안 제4조)

1) 연중 축산농가 세척·소독 및 소독확인증 발급, 평시운영기간에는 필요시 실시

2) 방역관리를 위한 축산농가 이동경로 및 정보수집 등

라. 방역소의 운영 기간 및 시간을 정함(안 제5조)

1) 특별방역기간 : 10월~이듬해 2월, 오전 9시~오후 10시

2) 평시방역기간 : 3월~9월, 오전 9시~오후 6시

리. 방역소 운영 인력 및 위탁을 정함(안 제6조)

1) 상주인력 1명 원칙

2) 방역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근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122,72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9. 24.~10. 1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거창군수는 재난형 가축질병(「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가목의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상시방역기구로서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이하 “방역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방역소는 거창군 거창읍 거합대로 3390에 둔다.

제3조(시설) 방역소의 시설은 소독기, 세척기, 자재 보관창고, 사무공간, 그 밖에 방역소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기능) 방역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중 축산농가 세척·소독 및 소독확인증 발급. 다만, 평시방역기간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2. 방역관리를 위한 축산농가 이동경로 및 정보수집
3. 그 밖에 방역소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 기간·시간) ① 방역소 운영 기간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특별방역기간

- 가.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 나.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평시방역기간

- 가. 특별방역기간을 제외한 3월부터 9월까지
- 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② 특별방역기간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한다.
- ③ 경계단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소의 운영 기간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방역소에는 상주인력 1명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경계단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인력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방역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역소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축산종합방역소 상주 인력 및 운영

나. 관련 조문 : 제6조(운영 및 위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창고 설치비	80	-	-	-	-	80
	운영비	42	42	42	42	42	210

3. 관련 의견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해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0년 기준)

1. 운영비

가. 상주인력 월 2,560천원(수당, 보험료 등) * 12 = 30,720천원

나. 운영비 월 1,000천원(전기세, 수도세 등) * 12 = 12,000천원

2. 창고 설치비 : 80,000천원(창고 1식)

※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사업비(2019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856	243	73	540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12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천적곤충 생산·공급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천적곤충 생산 및 공급 내용 신설(안 제6조)

나.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을 정함(안 제9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844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8. 28.~9. 1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거창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육성사업)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2.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4.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생산단지 조성
6.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
2.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
3. 친환경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자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친환경농업 실적 및 현황
2.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실적
3. 친환경농업 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
5. 그 밖에 군수가 제3조 각 호의 사업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천적곤충의 생산 및 공급)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천적 곤충(「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천적곤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하고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천적곤충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2.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천적곤충의 공급가격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천적곤충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천적곤충의 공급가격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농업환경 개선) 군수는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의 오염 방지 및 개발
3. 토양검정(土壤檢定: 거름 양·방법 개선 및 토양 개량을 위해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것)
4. 그 밖에 군수가 토양 개량 및 수질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군수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군 실천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
2.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3.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이행
4.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농자재 등의 도입 및 홍보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7. 천적곤충의 공급가격 결정
8.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9.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농업 관련 관계 기관·단체의 대표자

다. 친환경농업 관련 관계기관·단체의 대표자

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제3항제2호라목의 위원: 2년

2. 제1호 외의 위촉위원: 그 직에 있는 기간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에 의한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제3조(친환경농업 육성사업)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844	844	844	844	844	4,220

3. 관련 의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과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및 농업·농촌의 생태·환경 보전 등을 강화하기 위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19년 기준)

1. 친환경 실천농가 보상금 지원 : 134백만원
2. 친환경농업 관련 보조사업 : 700백만원
3. 천적곤충 생산·지원 : 10백만원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